

의안번호	2211502
의 퇴 인	곽규택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2.
추계번호	25B4728

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)	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업 및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(이하 “혁신지구”라 한다)를 조성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혁신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(제2항) 1. 이전 대상기관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2. 이전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 3. 유치원·초중등학교·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4. 문화·체육·의료·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 5.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(스타트업 허브, R&D센터 등)	
2	안 제5조(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)	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산업 집적 가능 지역을 해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해양산업 집적지에는 해양기술연구기관, 해양플랜트·해운 등 관련 기업,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(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)	국가는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, 조선, 수산업, 해양환경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7조(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제1항) 1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또는 특례 적용 2.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·취득세 등 조세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3.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·대학·연구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. 영어 등 외국어 기반 행정·교육·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5. 국제 해양박람회, 글로벌 기술포럼,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	재량규정
		국가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업, 산업통상자원부, 부산광역시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 간 해양 글로벌 투자협력체계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8조(디지털 해양산업 육성)	국가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해양 빅데이터 센터, 스마트항만 플랫폼,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2. 자율운항선박, 해양로봇, 해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. AI 기반 해양예측·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4. 디지털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·대학원·훈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,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국가는 디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, 예산·세제·R&D 지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9조(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민간기업, 연구기관, 스타트업 등이 입주하거나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1. 조세 감면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, 법인세, 취득세, 재산세 등의 감면 또는 유예 2. 입지 지원: 국공유지 무상 또는 저가 임대, 장기 임대부지 공급, 입지 선정 시 우선권 부여 3. 자금 지원: 정책자금, 신용보증, 기술보증, 창업투자 등의 금융지원 4. 규제특례: 규제자유특구 지정 또는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상 실증특례 적용 5. 인력지원: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, 교육·연수 프로그램 연계	재량규정
7	안 제10조(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)	국가는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. 주거 지원(주택 특별공급, 임대주택 공급,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) 2. 자녀 교육기관 연계 및 우선 배정 협조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체재비, 이사비 및 교통비 등 실비 지원 4. 학교의 설립·이전·운영, 교육재정지원, 전·입학 편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지원	의무규정
8	안 제11조(재정 지원 및 특례)	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,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대상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

Ⅲ. 미첨부 사유

□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조성, 해양산업 집적지¹⁾ 지정,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,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, 이전 대상기관²⁾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 및 해양산업 집적 촉진·지정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제정안은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(이하 “혁신지구”라 함)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산업 집적 가능 지역을 해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은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현 시점에서는 혁신지구 조성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“해양산업 집적지”란 해양수산부 및 관련 산업·연구기관·교육기관 등이 밀집하여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2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이전 대상기관”이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, 산하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□ 자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(안 제6조)

-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, 조선, 수산업, 해양 환경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와 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(안 제7조 및 제9조)

-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·취득세 등 조세 감면, 외국어 기반 행정·교육·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민간기업, 연구기관, 스타트업 등의 혁신지구 내 유치를 위하여 조세 감면, 자금 지원, 인력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감소 및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외국인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대상 기관, 감면 대상 조세 및 감면 비율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, 자금지원, 인력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(안 제8조)

- 제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양 빅데이터 센터·스마트항만 플랫폼·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, 자율운항선박·해양로봇·해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, AI 기반 해양예측·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(안 제10조)

-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지원, 일정 기간 체재비·이사비·교통비 등 실비 지원, 학교의 설립·이전·운영, 교육재정지원 등 교육 관련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전 직원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, 해당 기관의 이전 직원 수, 지원 기준·단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이전 대상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 중 부산 이전 직원(약 600명)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직원 전월세 지원(32억원), 이주·이사지원(44억원), 교통지원(통근버스·KTX 등, 36억원) 등 약 113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

[표 1] 해양수산부 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편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	사업개요	2026예산안
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(7041-303)		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및 안정적 정주·근무 여건 조성	
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	전월세	전세이자 및 월세비용 지원	3,230
	이주지원	이주지원비 지급	1,723
	이사비	이사 비용 지급	2,717
	버스	통근버스 임차료,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교통지원	2,432
	고속철도		441
	공용차량		364
	업무택시		400
	합 계		11,307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□ 재정지원 및 특례(안 제11조)

- 제정안은 국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,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대상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na.go.kr